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원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7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이원형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태, 민병주, 박승진,
서상열, 송도호, 윤기섭,
이영실, 임종국, 정준호,
최기찬, 최민규, 홍국표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도로교통법」 상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고 있으나,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
- 따라서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술에 취한 상태와 과로 질병, 약물 복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함(안 제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등(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) 또는 자전거등(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)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

2.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등(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) 또는 자전거등(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)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1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</u> <u>2.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</u>
② (생 략)	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과로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도록 하는 금지의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.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추계세제팀장 김중현
추계분석관 이설화
☎ 02-2180-7952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